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10. 21 선고 2021가단7425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

피 고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
담당변호사 신현일
변 론 종 결 2021. 9. 30.
판 결 선 고 2021. 10. 2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B 사이에 광양시 C 답 1,501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중 500/1501 지분(이하 ‘이 사건 지분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6. 19. 체결된 매매계약(이하 ‘이 사건 매매’라 한다)을 취소한다.
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0. 6. 25. 접수 제177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D(이하 ‘이 사건 회사’라 한다)은 2020. 3.경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, 원고가 위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(보증금액 2억 8,500만 원)을 하였고, B는 위 신용보증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를 연대보증 하였다.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2020. 8. 5. 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.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대위하여 2020. 9. 7. 농협에게 270,515,015원을 변제하였다.

나. 한편, B는 2020. 6. 19. 이 사건 매매를 하고, 2020. 6. 25.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다. 원고는 2020. 9. 18. 주식회사 D 및 B를 채무자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20차전11355호로 ‘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(이 사건 ‘원고’이다)에게 269,316,949원 및 그 중 268,895,47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’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20. 12. 1. 확정되었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당사자의 주장

1) 원고

원고의 채무자인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2020. 8. 5.로부터 1개월 여 전인 2020. 6. 19.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2) 피고

피고와 그 아버지 망 E는 F종중(이하 ‘이 사건 종중’이라 한다)의 종원으로 E가 2004. 6. 18.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종중에게 증여하였는데,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H(500/1,501 지분), A(501/1,501 지분), I(500/1,501 지분)에게

명의신탁 하였다. 그런데 I이 2009. 11. 29. 사망하여 B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, 이 사건 종중은 2020. 6.경 B에게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,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,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가 아니다.

나. 관련법리

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(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).

다. 판단

을 제1 내지 1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, ①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H, A, I은 2004. 6. 18. 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,21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, ② 그런데 망 E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인 J에게 2004. 5. 17., 1,000만 원을, 같은 달 31. 500만 원을 이체하였고, J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G에게 2004. 5. 27. 1,462만 원을 이체한 점(J의 수첩에는 2004. 5. 15. E와 이 사건 토지 구입건 전화 논의, 같은 달 27. 매매계약 및 대금정산 1,462만 원 등 기재가 있다), ③ 이 사건 종중의 2015. 1.경 종중재산 현황, 2019. 4.경 결산서, 2019. 4. 자산현황 및 부동산현황, 2020. 7.경 재산현황 등 서류상 이 사건 토지가 각 종중재산으로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, ④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J은 매년 광영시로부터 수령한 직불금 중 30만 원을 이 사건 종중에 납부하여 온 점, ⑤ B는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자 망 J의 상속인인 A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이 사건 종중의 명의신탁 재산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, B와 피고에게 원고 등 B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, 이 사건 매매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빈태욱